

[일련번호 : 1]

경기도체육회

개선조치

[제 목] 규약 및 기타규정 관리 미흡

[소 속 기 관] 경기복싱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복싱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회 「규약」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및 「경기도종목단체 규정」에 의거, 규약 및 기타규정을 절차에 맞게 의결하여 제·개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협회 「규약」 제50조(사무국 운영 등), 제52조(규정변경), 제53조(규정 제·개정 등)에 의거, 협회는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을 참고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규정 제·개정을 해야 한다.

또한 협회 「규약」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에 따라 협회는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써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협회의 규약 및 기타규정 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가지의 부적정한 사항이 발견 되었다.

가. 협회 「규약」 관리 미흡

협회는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53조(규약 등 제정·개정) 제1항에 따라, 본회 각종 규정을 참고하여 협회 「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협회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협회 「규약」 및 「경기도종목단체 규정」에 의거 개정해야 할 항목들을 일체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스포츠공정위원회 등 규정 미제정

협회는 「규약」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이사회 자문기구로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협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의 의결로 별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협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일부가 구성되어 있으나, 위원회별 관련 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위원회 기능 확인이 어렵고 위원회 기능에 따른 체계적인 조직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표] 경기도복싱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구성 등 현황

연 번	구 분	구 성	제 규정	비 고
1	스포츠공정위원회	7명	미제정	
2	경기력향상위원회	7명	미제정	
3	선수위원회	6명	미제정	기능확인 필요
4	단증위원회	7명	미제정	기능확인 필요
5	대회위원회	미구성	미제정	
6	심판위원회	미구성	미제정	
7	생활체육위원회	미구성	미제정	

※ 경기도복싱협회 제출 자료 재구성

[조 치 사 항] 경기도복싱협회장은

협회 「규약」 및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52조(규약변경)에 따라 절차를 거쳐 본회의 승인을 받아 「규약」을 최신화하기 바라며,

협회에 설치된 위원회가 각종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다할 수 있도록 본회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등을 참고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경기도체육회

권고조치

[제 목]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소 속 기 관] 경기도복싱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복싱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회 「규약」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협회 「규약」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에 따라 협회는 회계 업무 수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회계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본회 「회계규정」 제11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협회는 안정적인 사무국 회계 운영을 위해 재정보증에 가입하여 회계관계직원의 업무 과실로 인한 변상책임 부담을 덜어주고, 소신과 책임 있는 업무수행 및 회계 관련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감사일 현재 협회는 회계 업무를 처리하면서, 회계관계직원

해당하는 사무장, 사무국장, 회장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 치 사 항] 경기도복싱협회장은

직무관련 재산상 사고에 대비하여 협회 재정 손실을 최소화 하고 회계관계직원의 소신과 책임 있는 회계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재정보증보험 가입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